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8. 19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2. 8. 28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15회 남구의회(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1992. 9. 2/일)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추찬식)

가. 제안 이유

- 0. 불교, 기독교, 천주교등 종교 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구세를 면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 0. 내무부 세재 22670-206(92.6.8) 및 부산직할시 세정 22670-1199(92.7.15)호의 "종교 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구세 면제 조례(준칙)"에 의거 조례 제정

나. 주요 골자

- 0. 종교단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 0.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 0.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 면제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0.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여 건축물로 부속 토지에 한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토록하여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0.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불교, 기독교, 천주교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사회 복지시설 운영, 불우이웃돕기 실시등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는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위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열과성을 다하여 봉사활동을 해왔으나,
0.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구세를 면제하지 않고 계속 과세를 해온 것은, 종교 단체의 사기양양및 봉사 활동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살펴볼때,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금번 본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여 구세를 면제토록 배려한 것은, 향후 종교단체에서 사회봉사사업등 사회복지률 위해 더한층 정열을 쓸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0. 그러므로, 행정의 선진화와 능률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정착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수용 위원	세무 1과장 추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서 민법 제32조에 의거 면세를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부산 성네네틱트 수녀원으로서 1개소가 있음. · 지방세 부과대상은 치과 의원으로 사용하는 건축의 면적인 963.7m²와 치과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인 1,806m²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년도 지방세 부과내역은 재산세 87만2,070원 종합토지세 96만8,170원 사업소세 17만4,600원이이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 경영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단체에서는 본조례를 통과되면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사업을 더욱더 잘하겠다는 뜻인지 설명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단체에 세금 감면을 해주면 이익을 사업에 재투자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종교단체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것임.
배종환 위원	세무 1과장 추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의 수용범위를 설명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인을 포함하여 모든 일반인을 수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반인의 치료비를 감면해 주는 특혜가 있는지 설명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혜는 없음.
이태흠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적 해석을 설명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자는 조항에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여, 사교, 기타 비영리법인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사단 또는 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이 됨.

임종하 위원	"	<p>본조례가 통과되면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많이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요망</p>	<p>현재 의사들이 과잉 상태에 있고 의료서비스가 일단 병원이 종교 단체 보다 못하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며 또한 종교단체가 성실히 한다는 전제와 제도 개선의 취지에서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p>
-----------	---	---	---

5. 토론 요지

가. 찬성(이태흠 위원)

0. 종교단체에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한사람이라도 많이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나. 반대(배종환 위원)

0. 종교단체에 감면 혜택을 주면 일반 병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등 공정성을 갖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종교단체에 대하여 세금 감면은 부적합함.

6.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표결 결과 :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

7. 소수의견의 요지

0.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세금 감면혜택을 주면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사회 복지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임.